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01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임오경 · 허성무 · 안호영
윤준병 · 서영교 · 민형배
조계원 · 김동아 · 황명선
박수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

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국어문화원”을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경비의 일부를”을 “경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방법”을 “방법, 연합회의 설립·운영”으로 한다.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문화원연합회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합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생략) <u><신설></u>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u><신설></u>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u><신설></u>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경비를----- -----.
③ (생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방법, 연합회의 설립·운 영----- -----.